|  |  |
| --- | --- |
| **근로계약서** | |
| 주식회사 에이치닷(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
|  | **제 1 조 [ 근로계약기간 ]**   1. 본 근로계약은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
| **제 2 조 [ 근무부서 및 직무 ]**   1. 갑은 을을 아래 각호와 같이 근무하게 한다.   가.  근무부서 :  나.  담당업무 : 의 소속업무   1. 갑은 필요 시 을의 근무부서를 변경하거나 전항 이외의 업무를 을에게 부과할 수 있다. |
| **제 3 조 [ 취업장소 ]**   1. 을의 취업장소는 갑의 을/를 소재지로 한다. 2. 갑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갑은 을의 취업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 **제 4 조 [ 근무일 및 근로시간 ]**   1. 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한다.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 된다. 2.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3.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4항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휴게시간은 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30부터 13:30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제 5 조 [ 휴일 ]**   1. 갑은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한다. 단,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유급으로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6 조 [ 연차유급휴가 ]**   1. 갑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 | | | |
| **제 7 조 [ 연봉 ]**   1. 갑은 을에게 연봉 총액 원을 지급한다. 2. 을의 연봉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월 기본급과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구성되며 내역은 아래와 같다. | | | | | |
|  | 항목 |  | 금액 |  | 비고 |
| 월 기본급 |  | 원 |  | 1일 8시간, 주 48시간, 월 209시간 / 매월 |
| 월 연장근로수당 |  | 원 |  | 월 시간 \* 150% (주 시간) |
| 월 급여 총액 |  | 원 |  |  |
| 연간 총액 |  | 원 |  |  |
| 1. 갑은 을에게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갑은 을에게 각호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역할급: 반기단위로 을이 리더 및 핵심인재로 선발 및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 역량기대급 : 반기단위로 을이 을의 전기 성장단계보다 높은 수준의 역량을 발현한 경우 | | | | | |
| **제 8 조 [ 연봉계약기간 및 조정 ]**   1. 제7조의 연봉은 부터 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한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일의 익년부터 매년 1월 1일 제7조 제1항 소정의 연봉을 재조정한다. | | | | | |
| **제 9 조 [ 복리후생비 ]**   1. 갑은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 | | |
| **제 10 조 [ 임금 등의 지급시기 및 방법 ]**   1. 제 7조 제 2항 소정 월 급여 총액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5일 (이하 “급여일”)에 지급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하되, 급여일 이후 결근의 경우 익월 급여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2. 을의 근무기간이 정해진 산정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갑은 본 조의 임금 등을 을이 지정한 을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 | | | |

|  |  |
| --- | --- |
|  | **제 11 조 [ 수습기간 ]**   1. 을은 최초 근무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2. 전항의 수습기간 중 근무평정은 최초 근무개시일로부터 3개월 시점 및 5개월 시점에 각각 1회씩 실시하며 을이 업무수행을 계속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무 평정의 기준은 부여 업무의 수행 능력 뿐만 아니라 ‘회사 핵심가치’, ‘경영사상’에 대한 부합과 같은 정성적인 판단도 포함된다. 수습기간 평가는 인사위원회에서 진행을 한다. 3. 을은 위의 조항을 확인 받았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서명한다.   수습기간 적용 동의 서명 (서명) |
| **제 12 조 [ 퇴직금 ]**   1. 을이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갑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한다. 2. 기타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은 갑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른다. |
| **제 13 조 [ 사회보험 ]**   1. 갑은 을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한다. 2. 전항의 연금 및 보험과 관련된 을의 부담금은 매월 을의 월 급여 총액에서 공제한다. |
| **제 14 조 [ 제세공과 ]**   1. 을은 임금을 포함하여 갑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다. |
| **제 15 조 [ 준수의무 ]**   1. 을은 갑의 피고용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갑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을은 최선을 다하여 갑의 업무지시에 응하며 본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을은 계약기간 동안 갑의 사전동의나 요구가 없는 한 여하한 다른 업무에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종사하지 못하며, 어떠한 영업행위나 거래도 할 수 없다. 4. 을은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본 계약에 규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어떠한 정보라도 타인 또는 타 기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  |  |  |  |  |
| --- | --- | --- | --- | --- |
|  | **제 16 조 [ 손해배상 ]**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해지 후 갑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제 17 조 [ 정보제공 ]**   1. 계약 종료 후 을이 이직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서 을의 근무평정(업무능력, 성실성, 책임감, 협력성 등)결과를 요청 시 갑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 | |
| **제 18 조 [ 비밀유지 ]**   1. 본 계약 제 7조에서 정한 을의 연봉사항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공유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의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취득에 대한 시도 또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본 조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갑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을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 | |
| **제 19 조 [ 보칙 ]**   1.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기타 갑의 내부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조 1항의 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기타 갑의 내부규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본 계약에 준용한다. | | | |
| **“갑”** |  | | |
| **주식회사 에이치닷**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대표이사** | **:** | **(인)** |
| **“을”** |  | | |
| **주소**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성명** | **:** | **(인)** |